

의안번호	2210935
의 퇴 인	김위상의원
회 답 일	2025.7.31.
추계번호	25B332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 (정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물산업의 정의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공증우(人工增雨)등의 방법으로서¹⁾ 「기상법」 제18조 단서²⁾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을 포함

1) 개정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34호)

제23조(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가뭄,홍수 및 산불 등 재해 감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바닷물의 민물화

2.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3. 빗물 활용

4. 인공증우(人工增雨)

5. 그 밖에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한 방법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물산업의 정의에 인공지능 관련 사업이 포함될 경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에 따른 물산업 진흥시책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물산업진흥법」은 물산업의 범위를 정의하고(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제3조),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제9조),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제11조),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제13조 및 제14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제15조) 등 물산업에 대한 각종 진흥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는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공지능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 참고로,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사업은 글로벌 물시장 선점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경쟁우위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과 해외 물시장 개척 지원 사업 등의 내역사업을 포함하며,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은 68억 8,000만원임

- 다만,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확대될 물산업 진흥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2)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